

##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464호
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'2024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'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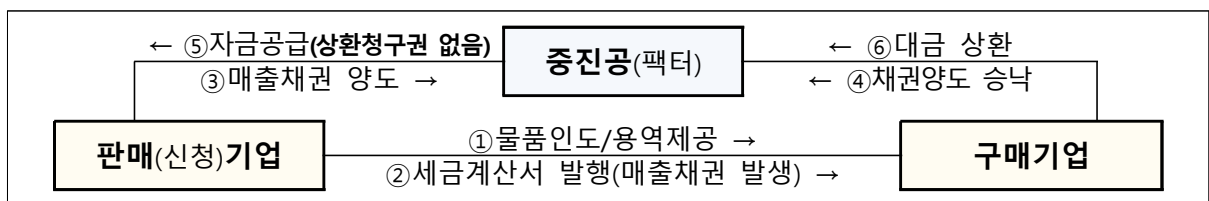
2024년 8월 21일  
중소벤처기업부장관  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

※ 본 공고는 「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」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4-81호, 2024.1.31.)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.

## 2024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변경공고

### 1. 사업 개요

- (목적)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
- (방식) 중소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'상환청구권 없이'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



\* 판매기업 :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

\* 구매기업 :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

- (기대효과) '상환청구권이 없는'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

- 또한,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로 중소기업이 팩토링 자금을 생산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제순환 체계 마련

## 2. 신청 및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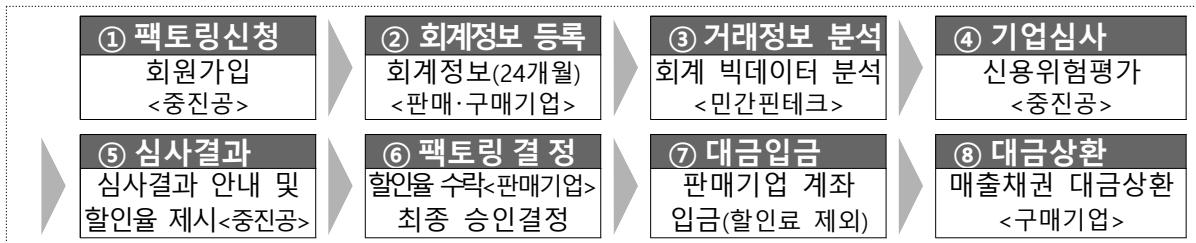
### 가. 지원대상 및 예산

- 신청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
  - \* 타 정책기관(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
  -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\*를 보유하고,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\*\*(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)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
  - \*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(단, 소상공인(제조업)은 2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기업도 신청가능)
  - \*\*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(다. 팩토링 절차 ②를 참고)
- 대상채권 : 중소기업이 물품·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\*
  - \*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(세금)계산서
  - \*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예산규모 : 675억원(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에 우선 지원)
  - \* 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 「새출발 희망 프로젝트」(‘24.7.3, 관계부처 합동)

### 나. 신청접수

- 신청방법 : 중진공 누리집(www.kosmes.or.kr)를 통해 신청
- 신청기간 : '24.1.31 ~ 예산소진 시까지

### 다. 팩토링 절차



- ① **(팩토링신청)**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누리집(www.kosmes.or.kr)를 통해 회원가입 및 자가진단\* 실시, 결산재무제표 등록

\*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팩토링 신청제한

- ② **(회계정보 등록)**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\* 등록 <판매기업·구매기업 모두 필요>
- \* 회계정보 : 기업이 활용 중인 회계프로그램 데이터
  - \* 판매기업의 신청등록 후 구매기업의 승낙 필요 (양사간 사전협의 필수)
  - \* 단, 구매기업이 대·중견기업, 유가증권·코스닥·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, 구매기업은 회계정보 등록 예외가능
- ③~④ **(기업심사)** 중진공은 비대면 방식으로 매출채권팩토링 신청(판매) 기업 및 구매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
- \*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+ 민간핀테크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
  - \* 대·중견기업, 유가증권·코스닥·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평가 가능
  - \* 단, 소상공인(제조업) 판매기업은 기업평가 생략
- ⑤~⑥ **(팩토링 결정)** 기업평가 이후 지원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산출하고, 신청기업이 할인율 수락 시 최종 팩토링 지원결정
- ⑦ **(팩토링대금 입금)** 중진공이 신청(판매)기업에 매출채권 원금에서 할인료(할인금액)를 차감하고 입금
- ⑧ **(팩토링대금 상환)** 구매기업은 팩토링 만기일에 정해진 계좌를 통해 팩토링 대금상환

### 3. 팩토링 지원조건

#### 가. 팩토링 한도 및 기간

- **(팩토링 한도)**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
  - \* 단,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/3 이내 (제조업 1/2이내)
  - \* 1회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(회계정보 기준, 동일거래처에서 동일날짜 발행 세금계산서는 합산)
  - \* 구매기업의 채무액(팩토링 잔액)은 10억원 이내로 가능
- **(지원기간)**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~90일(15일 단위)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

#### 나. 팩토링 할인율

- **(할인율)** 신용위험등급(구매기업), 팩토링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 결정 (연 4% 내외, 신청시기별 변동가능)

## 다. 팩토링 제한기업

구분	적용	내 용
① ② ③ ④	판 매 기 업	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가증권·코스닥 시장 상장기업, 「자본시장법」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</li> <li>-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(CR1)</li> <li>* 단, 업력 3년 미만 기업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상의 협동조합은 예외</li> <li>-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</li> </ul>
		소상공인(단,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)
		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신청</li> <li>-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</li> </ul>
		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
⑤	구 매 기 업	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팩토링 연체한 기업 팩토링 상환연장 중인 기업(신청일 기준)
⑥	구 통 기 업	휴·폐업중인 기업
⑦		세금을 체납중인 기업(단, 소상공인(제조업) 판매기업은 예외 적용하며,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)
⑧		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
⑨		한국신용정보원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라 연체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
⑩		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(별표1)을 영위하는 기업
⑪		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⑫		중진공 부실징후 기업 및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</li> <li>- 최근 3년 연속 '이자보상배(비)율 1.0미만'이고, 3년 연속 '영업활동 현금흐름이 (-)'인 기업 (단,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&amp;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.5%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)</li> <li>-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</li> </ul>

## 4. 문의처
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☎ 1357),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 
(☎ 1811-3655),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(☎ 02-3211-5605)

※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  
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.

<별표>

##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\*

업종 분류	분류코드(KSIC)	용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건설업	41 ~ 42	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3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4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~47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(단,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)
	47859 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93 中	다단계 방문판매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 中	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59142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정보서비스업	63999 中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(63999-1)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의업	731	수의업
사업 지원 서비스업	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
	75999 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
임대업	76390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서비스업	851~854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	855~856 中	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보건업	86	보건업 (단,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)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협회 및 단체	94	협회 및 단체 (단 「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」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)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
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	97 ~ 98	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

\*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용자 제외

\*\*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상공인은 용자 제외(제조업은 가능)